C - 113 - 2020

하여야 한다.

- (라) 굴착사면 상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 굴착 면 기울기를 준수하고, 빗물 등의 침투방지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(마) (라)항의 지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 1항의 별표 11에 따른다
- (바) 흙막이 지보공의 경우 계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토압 및 지하수위의 변화를 관측하고, 흙막이 벽체에 용수발생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 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(3) 감전 재해예방

- (가) 충전선로에 근접하여 비계의 조립·해체 등의 작업 시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와 충전전로와의 거리가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접 근한계거리(최소 접근한계거리는 3m이며 전압의 크기에 따라 증가)를 유지하거나, 충전전로에 방호관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충전전로 인근에서 이동식 크레인,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보 건규칙 제322조1항에 따른 이격거리(최소이격거리는 3m이며 전압의 크기에 따라 증가)를 유지하거나, 충전전로에 방호관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임시 분전반은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① 분전반 옥외 설치 시 비・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
 - ② 충전부 내부 보호판 설치 등의 보호조치
 - ③ 외함 접지
 - ④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상태 점검
- (라) 임시 수전설비 설치장소는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① 수전설비 설치위치의 적정성 검토
 - ② 울타리 설치 및 잠금장치 설치